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7
----------	-----

제출년월일 : 2020.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활동과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곤란한 수익사업이면서 공공성을 배재할 수 없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시설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경영성과 등의 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7조(임원)

-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함.

○ 조례안 제8조(이사장)

-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함.

○ 조례안 제9조(이사)

-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명함.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이사에 한하여는 임원추천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함.

○ 조례안 제10조(임원)

-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함.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조례안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함.

○ 조례안 제12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며,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조례안 제16조(이사회)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조례안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공단을 대표하도록 함.

○ 조례안 제18조(이사회 참여제한)

-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과 본인에 대한 제17조제3항에 따른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 참여를 제한함.

○ 조례안 제19조(사업)

- 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문화·관광·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정함.

○ 조례안 제24조(결산)

- 공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46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08. 03. ~ 08. 24.)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10144, 2020. 08. 19.)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에 따른 반영계획서 제출 완료
(복지과-47708, 2020. 08. 10., 행정과-16711, 2020. 08. 12.)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실-10511, 2020. 08. 27.)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부서장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④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자 공개모집의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4에 따른다.

-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는 인사운영, 예산의 집행, 직원의 복무 등 공단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의 평가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단, 더 이상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게 공단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2. 본인의 공단 대표권 제한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안을 심의할 경우

제4장 사업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관광·체육시설 중 군수가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2. 장묘시설 등의 복지시설 중 군수가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 세입으로 한다.

제20조(대행사업의 수행)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재무회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군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 ①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25조(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상임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군의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0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평창군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 설립 당시 군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군수가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단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5조(공단의 최초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 둔다.

[붙임]

관계 법령 발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시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비용과 출자금 편성

2. 비용추계 결과

○ 추계의 전제

-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6개 공공시설의 설립·운영비용과 출자금은 전액 군비로 충당하고, 시설의 운영 수입은 전액 군 세입으로 처리함.

○ 추계 결과

-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은 100백만원이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용은 5년간 10,916백만원, 연 평균 218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은 5년간 7,793백만원, 연 평균 1,559백만원으로 예상되며, 비용과 수입의 차액은 5년간 3,123백만원, 연 평균 624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재원조달 방안

- 재원은 전액 군비로 조성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과장 최 찬 섭
연락처	(033) 330 - 2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265	1,281	1,733	1,749	1,765	7,793
돌문화체험관	197	198	198	199	199	991
평창자연휴양림	112	116	121	126	131	606
계방산오토캠핑장	120	121	122	124	125	612
대관령휴게소	577	584	590	596	603	2,950
공설묘원	259	262	265	267	270	1,323
수학아카데미아	-	-	437	437	437	1,311
세 출	1,817	1,872	2,338	2,408	2,481	10,916
인건비	1,118	1,163	1,425	1,482	1,543	6,731
운영비	699	709	913	926	938	4,18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17	1,872	2,338	2,408	10,916
	지방세	1,817	1,872	2,338	2,408	10,91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